

#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· 벌금 · 징역 부과기준

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와 벌금 및 징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“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의 위반사항”에 있어 조치기준 및 이와 관련된 제반 관계서류의 작성에 대해 법조항 별로 분류하고, 이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.

## 1.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위반사항 (법 제30조 제3항)

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### 가.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
- (1) 위반행위 : ① 전액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 
② 75% 이상 100% 미만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 
③ 50% 이상 75% 미만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 
④ 25% 이상 50% 미만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 
⑤ 25% 미만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
- (2) 조치기준 :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. (단, 목적외 사용금액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하고 2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)
- (3) 부과금액 : 위반사항 ①항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, ②항은 800만원 이하 과태료, ③항은 600만원 이하 과태료, ④항은 400만원 이하 과태료, ⑤항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### 나.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진척도에 의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

- (1) 위반행위 : ① 전액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
② 75% 이상 100% 미만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
③ 50% 이상 75% 미만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
④ 25% 이상 50% 미만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
⑤ 25% 미만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
- (2) 조치기준 :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. (단, 목적외 사용금액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하고 2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)
- (3) 부과금액 : 위반사항 ①항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, ②항은 800만원 이하 과태료, ③항은 600만원 이하 과태료, ④항은 400만원 이하 과태료, ⑤항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**다.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**

(1) 위반행위 : ① 사용내역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

②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

(2) 조치기준 :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. (단, 공정을 등  
을 감안하여 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)

(3) 부과금액 : 위반사항 ①항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, ②항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**라. 관계서류 :**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(참고 1), ② 항목별 사용내역(참고 2), ③ 본사안  
전관리비 사용내역서(참고 3), ④ 항목별 사용내역 및 안전관리비 산출내역(참고 4)

**【참고 1】**

**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**

건설업체명	공 사 명	
소 재 지	업 무 계	
공사종목	공 사 기 간	-
발 주 지	누계공정률	%
계 정 장	공사진척도에의 중 사용 기준금액	원
안전관리비	(안전관리비)별표3(사용기준)	원

시 정 관 역		단	액
합	계	원	원
1. 안전관리비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			
2. 안전시설비 등			
3.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			
4. 안전진단비 등			
5.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			
6.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			
7.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			
8. 본사사용비			

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작성 자 직책 성명 (서명 또는 인)

210mm x 297mm  
(발행용지 60g=(재용용종))

**【참고 2】**

**항 목 별 사 용 내 역**

항 목	사용일자	사 용 내 역	금 액
1. 안전관리비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			
2. 안전시설비 등			
3.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			
4. 안전진단비 등			
5.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			
6.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			
7.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			
8. 본사사용비			

※ 주 :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

**【참고 3】**

**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**

건설업체명			
소 재 지			
대 표 자			
구 분	전년년도	전 년 도	당해년도
본사 안전관리비 집행예산			
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실적			

시 정 관 역		단	액
합	계	원	원
1. 안전관리비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			
2. 안전시설비 등			
3.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			
4. 안전진단비 등			
5.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			
6.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			
7.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			
8. 본사 안전관리부서 운영비 등			

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 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직장 지 소속 직책 성명 (서명 또는 인)  
확인 지 소속 직책 성명 (서명 또는 인)  
대표이사 (서명 또는 인)

2000. 5. 10 개정용인 210mm x 297mm  
(발행용지 60g=(재용용종))

**【참고 4】**

**항목별 사용내역 및 안전관리비 산출내역**

□ 항목별 사용내역

항 목	사용일자	사 용 내 역	금 액
1. 안전관리비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			
2. 안전시설비 등			
3.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			
4. 안전진단비 등			
5.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			
6.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			
7.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			
8. 본사안전관리부서 운영비 등			

□ 안전관리비 산출내역

공 사 명	공사기간	총공사비	안전관리비	본사사용분	기 타
계			-		

※ 붙임 : 본사조직구분, 인사명명서, 업무일지, 사용명수증

## 2.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 (법 제30조 제4항)

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·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가. 위반행위 :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

나. 조치기준 : 20일 이내에 기술지도를 받도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(단, 공정율 등을 감안하여 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)

다. 부과금액 :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라. 관계서류 : 기술지도계약서(참고 5)

**【참고 5】**

기술지도계약서	
인건명세서명	과태료액
공급사명	공급사금액
주소	(전화번호)
대표이사명	
대표이사직	주요
대표이사직	주소
대표이사직	전화번호
대표이사직	(전화번호, 정보통신) 전자
대표이사직	종( )
대표이사직	별
대표이사직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(제1)항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계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.	
년 월 일	
위탁자(사업장명) :	(서명 또는 인)
수탁자(전문기관명) :	(서명 또는 인)
계약금액 :	(서명 또는 인)
계약기간 :	(서명 또는 인)

## 3. 안전·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(법 제31조 제1항)

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·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가. 위반행위 :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(1회당)

- ① 생산직 및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
- ②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

나. 조치기준 :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

다. 부과금액 : 위반사항 ①항은 30만원 이하 과태료, ②항은 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라. 관계서류 : ① 정기안전보건교육일지(참고 6), ② 관리감독자교육 수료증

